

## 유선사업면허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을 위반한 유선사업자에 대하여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3. 13.

속 초 해 양 경 찰 서



1. 공고기간 : 2024. 3. 13. ~ 2024. 3. 27. (14일간)
2.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관련 법규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.

사 업 자	주 소	위반사항	행정처분사항
신세**광개발(주) (김*구)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230	유도선법 제27조 위반 (유도선법 제9조 제1항 제7호)	사업정지 1개월 '24. 2. 29. ~ 3. 28.

3.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 추후 1년 이내 동일한 사항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 가중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4.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(서면 또는 온라인) 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제 2024-02호

## 행정처분 통지서

상호(명칭)	(주)신세**광개발(하모니호)		
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	강원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230		
사업자명(대표자)	(주)신세**광개발 (대표 : 김*구)	생년월일	**.*.*.**
주소	강원특별자치도 *** * * * * *, * * * * *		
행정처분 내용	○ 사업정지 1개월		

귀 사업장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.

※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4 년 2 월 29 일

속초해양경찰서

